

긴급입찰 사유서

1.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- 물품(다열원 적응형 소형 차입터빈 발전설비)
- 사업기간 : 계약 체결일 ~ 2026년 12월 11일
- 소요예산 : 772,000,000원(vat 미포함)
- 계약방식 : 일반경쟁(협상에 의한 계약)

2. 사유 및 법적 근거

1) 긴급 입찰 사유

- 본 구매 건은 「2026년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」 선정 사업장의 감축설비 도입을 위한 것으로, 사업기간 내 설치 완료와 온실가스 감축성과 확보가 요구됨.
- 설비 제작·설치 및 완료보고, 현장확인,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할 때 조속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므로, 사업기간 확보 및 보조금 집행 차질 방지를 위해 긴급입찰로 추진 하고자 함.

2) 법적근거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

▶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

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- 1의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

▶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

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
1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

◎ 「(계약예규)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」 제77조 제2항

▶ (계약예규) 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 제 77조 제2항

②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,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.